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87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1. 19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11. 19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11. 26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이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읍면 확대배치에 따른 총정원 증가 : 별정직 8명 → 일반직 15명(전 읍면)
- 고성군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개정 : 549명 → 556명(증 7명)
(안 제2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경남도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
『자치 12200-11269 ('99. 10. 6)』과 관련
-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배치된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,
-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계획과 상치되어 신규채용 방안, 현직 공무원의 충원기회 부여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충분히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은

● 답 : 총 대상인원은 15명이며, 기존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 8명은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부족인원 7명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1999. 11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